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자에 대한 수사·감사 조치와 윤리경영 강화 노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영평가 편람에 윤리경영 관련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6개 공기업 및 16개 출연기관의 개별 근거 조례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윤리경영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있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

본 개정안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